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8 발의연월일: 2020. 9. 24.

발 의 자:이해식・이수진・강선우

서영석 · 이학영 · 오영환

신정훈 · 양향자 · 김철민

오영훈 · 민형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부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감에 편승하여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및

제79조).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재난 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①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또는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략)
<<u>신</u>설>

4. • 5. (생략)

| <u>할 수 있다.</u> |
|---------------------|
| ∥79조(벌칙) |
| |
|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
| 3의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 |
| 여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
| 사실을 유포한 자 |
| 4.·5. (현행과 같음) |